



대한건설협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제목 '17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 사전 절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도입으로 공사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17년 1월초 건설업종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건설업체가 외국인력 고용시 반드시 필요한 '내국인 구인노력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력 사용 계획이 있으신 건설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국인 구인 노력

- 내국인 구인노력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노력(예외적으로 워크넷 등록후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간)
 -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 구인 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수 있음

나. 참고사항

-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이상 사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노력"을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 참고로, '17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 및 배정은 1월초 실시할 예정인 바, 배정인원 조기 소진이 예상되므로 사전 조치 필요(현장별 신규도입인원 30명 배정한도)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청 → 근로계약체결
→ 시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끝.

대한건설협회장



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참조 : 인력담당부서장), 외국인력활용업체 대표이사(참조 : 외국인력담당 부서장)

11/30

과장 **황동진** 부장 **유승식** 팀장 **진광현**

협조자

시행 외국인력고용지원팀-291 접수
우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 <http://www.cak.or.kr>
전화 02-3485-8453 전송 02-516-7258 / djhwang@cak.or.kr / 공개